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산청에 역사문화권정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유산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8급 2명), 디지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국가유산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2. 12.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유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장(제4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한시정원

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국가유산청에 둔다.

별표 1 중 총계 “345”를 “351”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5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1”을 “337”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국가유산청 공무원 한시정원표(제45조 관련)

제45조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8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7급 이하	1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제13장 한시정원</u> <u>제45조(한시정원) 무형유산 전수</u> <u>교육관 건립 관련 업무를 추진</u> <u>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u> <u>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u> <u>제1항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u> <u>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u> <u>국가유산청에 둔다.</u>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국가유산청 공무원 정원표(제4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345</u>	<u>351</u>	+6
·	·	·	
·	·	·	
일반직 계	<u>344</u>	<u>350</u>	+6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1</u>	<u>337</u>	+6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6